

Ia1.28.2

Intl

국제인권법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 제1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활동자료(96-98년)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정부편역어 : 유엔아동권리법학) 담당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연대회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연대회의에 관한 모의안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조약 조약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연대회의(참조 2)

4. 유엔아동권리조약 제44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보고서 : 정부보고서

5. 유엔아동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 민간보고서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결론서 의견 : 의견권고안

본 연대회의는 유엔권고사항(참조 1)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의부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계획, 지난 1년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11개  
항목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간단체들의 권고에 대해 위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 조약의 기조가 아니라 인간단체의 많은 조약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특히도 13가지의 주요조항  
에는 문단이 인간단체의 우선적인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약의 내용과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  
었다. 조약 44조(조약의 이행)를 위한 협력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기  
구'를 언급한 것은 바로 민간단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사실은 위원회가 조약의 기조가 아니라  
사실상의 인간단체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했다는 것을 분명할 문단의 인간단체의 가장 중요한 공  
적이기도 하다. (Sharon Derick, (199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 Nijhoff Publishers)

2. 위원회는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유엔권고안 20번)

-아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조약의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부터  
민간단체들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민간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라 적절할 때 민간단체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단체위원회의 사무총장 직책을 가진 13여명의 정부대표자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 보건복지부, 법무부 인권과, 외무부 인권사회과 내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정부번역어 : 유엔아동권리협약) 담당자  
발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내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

\* 이하 공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합니다.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 **조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위원회**

유엔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 **연대회의(참조 2)**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44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보고서 : **정부보고서**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 : **유엔권고안**

본 연대회의는 유엔권고안(참조 1)에 대하여 정부의 이행의무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를 모니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계획,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에 대한 아래 11개 민간단체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유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조약의 기초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안은 조약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적어도 13가지의 주요조항 또는 문단이 민간단체의 우선적인 공적으로 인정받았고, 조약의 내용과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조약 45조에 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기구'를 언급한 것은 바로 민간단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사실은 위원회가 조약의 기초작업에서 보여준 민간단체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더러 민간단체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Sharon Detrick, (199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위원회는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유엔권고안 23번)

## -아래-

질문 1 :

유엔권고안 4항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위원회는 설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가 약 10여명의 정부관계자



와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 식사를 한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동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동권리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이 나서서 이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을 모았다”면서 “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없지만,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해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유니세프에서 만든 한차례의 모임을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거짓보고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해명하여 주십시오.

질문 2 :

유엔권고안 6, 8, 19항에 따라 정부가 조약에 대해 유보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문 3 :

유엔권고안 21항과 95년부터 시작된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의 실천을 위해 정부가 이행한 사항을 구체적 예를 들어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4 :

유엔권고안 23항에 따른 기구의 설치 및 음부즈맨 제도, 아동인권 감시기관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질문 5 :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조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민간단체의 모니터 작업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

유엔권고안 2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백서가 될만한 자료와 지표의 개발과 분류, 정리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질문 7 :

유엔권고안 20항, 25항, 27항에 따라 혼외출생아동, 혼혈아, 소년·소녀 가장세대, 고아·미아, 장애아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새로 추가된 특별보호조치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8 :

유엔권고안 28항에 따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회복을 돕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추가된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질문 9 :

유엔권고안 30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조약 비준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10 :

유엔권고안 31항에 따라 지난 1년간 소년사업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11 :

유엔권고안 32항에 따라 정부는 정부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위원회의 최종의견(권고안)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참조 1(유엔권고안 / 유엔문서번호 CRC/C/15/Add.51)-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 A.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 준 정보와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해 준 추가 정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체계 내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4.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이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흠족하게 바라본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조약에 대한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삼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현시기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실현하려는 노력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빈곤의 증대로 영향받는 극빈층 아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은 최근에야 군사통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9조 3항, 21조 (a)항 그리고 40조 2항 (b)호의 (v)를 유보한 처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아동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에 반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조약에서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아동,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된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 공무원, 심리학자, 보건의료인 등 한국에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11. 조약 4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용자원의 최대범위까지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우려한다. 아동을 사회적·인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집단의 아동들의 욕구에 대하여도 배려가 충분치 못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원칙 (즉 조약 2, 3, 12조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최소결혼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아동 그리고 혼외출생아동을 괴롭히는 차별적 태도의 존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13.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을 가질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불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악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상으로 배려한다는 원칙과 조약 21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장치들과 관련하여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국제 입양율이 높은 것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적절한 조사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아동 유기문제, 높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의 지속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육제도에서 조약 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아동이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



다.

17. 위원회는 아동이 노동해야 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비롯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허용최소연령간의 모순에 위원회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사법제도와 37, 39, 40조 등 조약과 조화되지 못하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 21조 (a)호, 40조 (b)호의 (v)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 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의 견지에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아동의 의사 존중(조약 12조) 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혼인 가능최소연령의 설정, 조약 23조에 따르는 모든 장애 아동의 기본권(특히 교육권)의 보장,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허용최소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게끔 높이는 일. 또한 위원회는 국내·국제 입양에 있어서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게끔 관련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동을 위한 음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기관과 감시기관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진전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가용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데,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이며,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바대로만 제한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18조, 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소년·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있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29조에 표현된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아동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것을 권장한다.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 조약 138호의 비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 줄 것을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 39, 40조에 나타난 조약의 정신과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 라인'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규칙'과 같은 소년사법 분야의 유엔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그리고 사법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절차 (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기준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행정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 (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방지와 형사정의분과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볼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 될것을 권고한다.



## -참조 2(연대회의)-

### 연대회의 조직구성

공동대표 : 이오덕(李五德 교육학자) / 이윤구(李潤求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 / 주정일(朱貞一 아동학자) / 한승헌(韓勝憲 변호사)

실무대표 : 이기범(李起範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간사단체 :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徐俊植)

실무간사 : 류은숙(柳銀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소속단체 : 공동육아연구회 /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스러기선교회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ACRP서울평화교육센터 / 성폭력상담소 /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 어린이도서연구회 / 여성단체연합 / 열린글 나눔살터 /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 한국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개인참여(민간보고서 집필 및 감수) : 노혜련(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 이용교(교수,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 안창도(교육민회) / 장호순(교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연대회의 주요활동

-95년 2월 9일 :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95년 3월 15일 : 연대회의 결성식

-95년 5월 : 중앙일보사와 공동기획으로 어린이의 달 기획시리즈 7회 연재  
조약홍보를 위한 만화유인물 2만부 제작, 배포

-95년 7월 7일 : 민간보고서 위원회에 제출

-95년 11월 22일 :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 민간대표로 초청받아 참가, 위원회는 "한국 민간단체 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실천지향적이다" 평가

-96년 1월 18-19일 : 위원회 제11차 회기 읍저버로 참석, 대한민국 정부 답변 모니터

-96년 1월 26일 :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

-96년 2월 1일 연대회의 기자회견 : 위원회 참가보고 및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홍보, 연대회의 입장 발표

-97년 5월 2일 : 조약해설논문과 정부보고서, 민간보고서, 위원회 권고안등을 자료로 담은 책,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출판예정



정부질의사항에 대한 민간단체 보충서  
(번호는 정부에 보낸 질의사항 번호임)

4. 현재 아동을 위한 ombudsman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따라서 비정부조직으로 '아동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아동권리조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사례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기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이홍교)

5. 정부는 위의 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매년 '아동백서'로 발간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이홍교)

8. 유엔아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부보고서, 이에 대한 민간보고서 그리고 유엔의 추가질 의사항 등은 상세히 수록한 '한국아동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는 소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과 주요일간 신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알기쉬운 인간강좌'를 개설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용 아동권리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관한 시청자 자료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한다.(이홍교)

9. 민법 제909에 의하면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부당한 경우라도 대항능력이 매우 약하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있는데 성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비록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폭력이 아닌 신체적 하대나 정신적 폭력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한국여성의 전화콜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신체적 폭력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가해자를 임시로 퇴거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를 격리해서 보호, 보호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치'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홍교)

12. 현재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1) 국민학교 교과서 사회과목에 매우 작은 분량의 '88장애인 올림픽'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2) KBS 제1 텔레비전 뉴스(오후 5시) 시간에 수화봉어음 삽입하고 있다.

3) 지하철 3-4호선 지하철 내부에 자막안내표시가 되어 있다,

장애아동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과 각종 연수과정에 장애인을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 육성

2) 공익방송광고 확대

3)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날 기념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필요



#### 4) 장애인과 관련된 영화 및 비디오테이 제작 보급

15. 현재 정부에 의한 국적관련 법률의 제정도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만 95년 12월9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체류중 중국여권과 북한 공민증을 가지고 귀임을 위해 입국한 북한주민에 대해, 중국여권소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민주법연)

16.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체 교과제공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법연)

17.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산한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 이혼이나 부모가출, 자녀 방임 및 유기 시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시에 부모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아동 양육권을 포기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에 보호하고 있으며, 이후에 부모로부터 작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아동을 돌려보내고 있다. 최근 한국 이혼부모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모 쌍방을 방문하거나 관계를 지속시킨 아동의 권리보장은 법적인 뒷받침없이 어렵다. (부스리기선교회)

20. 첫째, 부모교육을 통해서 예방한다. 부모교육내용은 올바른 가족관계, 책임있는 부모의 역할, 아동을 유기방치할 경우에 받는 아이들의 상처와 충격 그리고 결혼가정 자녀의 분계점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등이다.

둘째, 결혼가정 치료센터 운영이다. 종래에는 여성, 남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위한 각계 선교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탁아방, 공부방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가정으로 보내도 가난이나 성격결함 등으로 또는 올바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지 못한 자격없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그 자녀들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알콜중독, 성격이상이나 파탄자, 성적인 파대자나 문제와 결함을 가진 부모들과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녀들을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결혼가정치유센터를 교회차원에서 운영하거나 단계별로 연합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부스리기선교회)

21. 현재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소년원 감화원에 수감되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분계와 올바른 심장을 파괴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오히려 소년원, 감화원에서

새로운 10대 비행범죄를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적기도 만나, 가정이 상선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 올바른 전인교육,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가정환경이다. 그러므로 대리가정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거나 자매결연 내지 법적인 입양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사연스럽게 부모처럼 보살피주고 양육하는 대리가정의 열린 가족형태가 더 효과적이다. 부스리기선교회를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다. 성남은행촌의 가족, 비행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소년원에 지기 않도록 판사에게 보증을 해주고 복사내외가 양육, 교육을 하고 그 생활비를 본회가 지급하고 있는데 아이들 5명과 4명의



복사 식구가 12명의 공장에서 살지만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부스리기선교회)

22. 아동이 어떠한 학대를 받을 때도 호소하면 경찰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①현재 한국에 있는 119구급대의 긴급구조 상황처럼 아동이 유기, 방치, 폭력에 의한 학대를 받을 때 전화통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긴급아동구조반 조직 및 운영

②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방치법 제정

③학대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

④격리된 아동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대리가정이나 아동수용시설 확보

⑤알콜중독이나 지속적인 폭력행사 부모 및 성폭행 부모와무능력자나 정신치료를 요하는 부모들을 장기간 격리수용하고 결손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⑥10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10대 소녀와 매춘을 하는 성인남자처벌법 제정 및 신시

⑦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소득층, 저학력 소지 부모나 결혼기점에서 성장한 부모들이나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교육, 올바른 가정 생활에 관한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⑧TV나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교육하며, 드라마나 만화, 홍보지등을 통하여 직·간접 홍보한다.(부스리기선교회)

23. 우리나라는 없다. 노르웨이의 '마네올부네'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전화통화(요금은 시내통화로)를 아동보호기관이나 가정에서의 학대받은 아동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4시간 전화상담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상담의 내용등을 종합분석하여 TV나 라디오를 통해 전국의 국민들에게 보고되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계몽, 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문제해결 토론과정에 참여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어 국정 자문기관에서 아동,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부스리기선교회)

24.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87년 대선 공약으로 88년 3월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약 4개월동안 관련 권토기로 위임으로 하여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장애인 문제로 정리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1.의료보장: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보조, 의료계활센터 설치비 지원

2.개발용표교부: 연 2만명에게 개화당스구 무상기간, 특수납교, 특수학급 3천개 증설

3.취업보장: 장애인직업개발공단 설치

4.소득의 보장: 생활보호장애인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충급여 실시, 4만명에게 장애수당 지급(월 5만원), 중증장애인의 자녀 약3만명에게 교육비 보조

5.복지시설의 확보: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설, 인력충원(6백명),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설 운영비 지원

6.생활환경의 조성: 전화정보 전달사업 지원, 점서, 녹음서 출판시설 지원

7.국민의 이해 증진: 장애인단체지원(시·도별 1개 단체)

8. 연구의 활성화: 국립특수교육연구소 설치, 국립재활원의 기능강화



전체적으로 77개의 세부사업으로 정리된 하였고 이중 예산관련사업은 24종이며 법령제도의 개선, 행정지원등 비 예산사업은 53종이다.

\* 장애인의 전문가양성내용과 사회통합내용

1) 부족한 전문가

특수교사 8개 대학에서 언어치료사와 직업재활상담원은 각각 1개 학교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청각사나 조장구사는 전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의 노력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26,797명의 장애아동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특수교육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은 10%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즉 형식적인 통합교육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분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장애우권익연구소)

25. 아동 그룹을 위한 사회복지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복지를 위해 1년의 국가예산의 20%가 사회복지보장 기금으로 책정 집행되어야 하며,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이 중보편적 예산의 10%가 아동그룹을 위해 쓰이질 수 있도록 계층, 교육해야 한다.(부스리기선교회)

26. 소년소녀 가정들은 정부나 동사무소, 일민단체에서 다소의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다.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주어져야 한다. 부모의 사망, 사고로 가정이 상실된 경우라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엄마의 넉넉한 품과 사랑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대리부모, 대리가정에 의해서 양육,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비만 지급하고 그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 각 지역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동네의 자녀로 양육하는 공동체 책임이 부여되고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중에서 부모중에서 부모가 있으면서도 방치, 유기되거나 폭력으로 학대받아 가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운영과 재활교육이 시급하다, 학교에서 자퇴하는 청소년이 1년에 6-7만명(한겨레신문, 95.10.23)인데 이들은 거의가출을 동반하고 있고 60-70%가 다시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활교육이나 가출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시급하다.

그리고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결산으로 가출을 시도하기 직전의 위기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알콜중독, 무능력, 질병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발굴하여 부스리기선교회에서 결손가정 생활비 혹은 장학금을 지급하여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외에도 생활교육, 정서교육과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존교육(세탁, 요리, 학교준비물, 숙제, 학업지도)은 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연료비, 시설보안비, 교재구입비, 교사취지생계비를 최소한 후원하고 있는데(1달 평균 20-30만원) 이 경비는 후원회원에게서 조달된다. 후원회원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액과 후원시기, 후원방법을 결정하며 혼자서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지극히 작은 후원금을 보내오면 부스리기 사무실에서 종합하여 도



24

J

음이 필요한 가정과 공부방 청소년들에게 지급한다. 총액은 95년 1억 2천만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최소한의 경비이고 전구에 있는 35군데의 어린이집, 공부방과 54명의 심슨가정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아주 불충분하다.

최소한의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국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불우한 환경에 자라는 아동1명이 16세가 될 때까지 한화로 15만원(노르웨이 1 크2백 크로네)이 매달 정부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성도는 시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가정 '어린이 가족부'의 전담부서가 정부조직에 개편 운영되어야 한다.

32.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 문화체육부에서 설치한 '지역 청소년 공부방'을 기존에 운영해온 민간단체의 공부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막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전환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서공연)



~~원: 광대자 전하. 문하 (주) 박복호~~  
~~발신: 시정법 전문부 (주) 박복호~~ 권고사항 '보리' 등, 보내드립니다.)

수신: 류은숙(연대회의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발신: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제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모니터/회신

=====

유엔권고안 23번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유엔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정부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권리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설치된 바 없다.

정부는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한국아동권리위원회'를 정부 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법적 뒷받침을 받는 공식 기구라기 보다는 아동/청소년권리에 관심있는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기구이다.

유엔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아동을 위한 음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기관과 감시기관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보아서 정부는 시급히 아동/청소년권리에 관련된 행정부처,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표,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대표를 망라한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각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6년도에 '청소년권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에게 이 위원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제반활동이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인권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센터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 관련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1996년도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아동학자, 사회복지학자, 가정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아동권리학회'를 창설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아동학자



유엔권고안 24번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자료 수집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여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문제 그리고 청소년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청소년 권리는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중주류집단인 학생에 대한 자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되고 있지만 빈곤, 장애, 가족결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더구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백서'조차 없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조차 없다.

유엔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아동/청소년 권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전체 사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이란 인구집단의 상황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기존의 통계자료가 청소년연령집단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아동/청소년의 '살의 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자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학제간연구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정보센타를 운영하여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중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보센타'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치 5년마다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아동/청소년보고서'가 매 3년 혹은 5년마다 발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인구집단은 공식통계에서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수신 : 류은숙(연대회의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발신 :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제목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모니터/회신

---

유엔권고안 제 23조(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유엔이 권고한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기본권인 교육권마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초·중등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었다. 그런데 96년 10월 현재 장애아동의 교육율이 44.6%(96년 연차보고서, 교육부)에 불과하다.

이 현실은 한국 정부의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국제협약 중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무상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만 그 수익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제협약도 교육받고 있는 아동에게만 그 수익이 돌아가고 또한 그 수익의 정도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국제협약은 장애아동의 자립촉진과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조치와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그리고 정보교환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가능한 제공된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교육, 훈련, 건강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첫 번째 해결과제로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의무화이다.

장애아동의 존엄성 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조기교육을 통한 통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의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무상교육의 수익을 받은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사설 조기교육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월 교육비가 적어도 20-40만원으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통합교육의 실현이다.

장애아동 권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 조절이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현실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매우 요원하다.

세 번째는 장애아동 개개인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소위 개별화 교육이라는 이 과제는 한 학급당 1인의 교사와 15-20여명에 이르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어 이 또한 학급당 인원 수 조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아동이나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1인당 2-3인이어야 하며 그 외에 7-8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점은 개인별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수준과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활성화이다.

네 번째는 재활 및 직업교육 강화이다.

현재 한국의 특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직종은 목공예, 수예 등 1차 산업에 한정돼 있어 직업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직종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



다.

이외에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들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현재 이 과제 해결의 책임을 주로 교사나 부모 그리고 보호자가 지고 있다. 따라서 해결시점이 너무 멀고도 재정 취약으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임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크게 요구된다.



수신 :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715-9186)

발신 : 외무부 인권사회과 박 지은 사무관

제목 :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1. 아동권리협약 유보

○ 아동권리협약 3개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았음

○ 유보장외에 대한 의견

- 제9조 제3항 : 국내법과 일치하므로 유보 철회에 문제없음. 주무부  
직인 보건복지부가 철회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국 협조 예정임

- 제21조 및 제40조 제2항 : 국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 *21조는 21조*

2. 아동권리위 최종의견 홍보 실적(권고 32번)

○ 법무부는 참가후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최종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

3. ILO 조약 138호(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 비준

○ 아직 비준하지 않았음

4. 소년사법제도의 개혁

○ 소년,소녀가장등 무료법률구조

정부는 96.61부터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유이법무관으로 하이급 무료로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사건의 변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

인민일보  
인민일보  
인민일보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 답 변 서

- 질 문 : 천 정 배 의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답 변 : 외무부장관(서명) 유 종 ~~하~~
- 비 , 고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별첨 답변 내용은 국내이행관련 주무부처로부터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답변 문안을 준비한 주무부처를 명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 19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국 아동권리 협약 최초보고서 심의시 우리가 설립하였다고 보고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존재 여부 및 국가위원회 설립계획

○ 답변내용 (1)

우리나라가 '91.12.20.부터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된 후,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95.8월 정부관련부처와 학계, 민간기관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국가보고서 작성사업을 수행했고 향후에도 아동권리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등 위원회의 기능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 바, 이러한 배경에 따라 '96.1월 국가보고서 심의시 “A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established”라고 답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가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이라고 답한 것은 아니며 이는 96.1.의 보고서 심의시 위원회의 기능을 “협약에 인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를 향상시키도록 정부에 권고하고 협약에 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정한다”고 설명한데서도 명백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래의 사업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여 한국아동권리위원회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회의를 정례화 하게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발한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질문내용 (2)

- 아동권리협약 비준시 우리가 3개항에 대하여 유보한 이유 및 동 유보 철회계획

## ○ 답변내용 (2)

우리나라는 1992년 아동권리협약 비준시 3개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 협약 제9조 3항 : 협약은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협약 제21조 가항 :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협약 제40조 2항 나호 : 상소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음.

법무부는 제9조 제3항 재검토 결과,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권리측면에서 법조문을 정하는 것이 통례인 바 우리나라 역시 위 입법례에 따른 것일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상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어 협약 제9조 제3항과 우리 민법 제837조2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 동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제21조 및 40조의 규정은 국내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 즉, 사법당국의 허가없이 부모의 동의에 의한 입양 및 비상상황하에서 상소권의 제한은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주무부처 : 법무부



중기에 대한 관심 - 국제적인  
 6월 6일, 세계 어린이날 기념  
 5월 12일, 유엔 아동권리조약  
 6월 2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 질문내용 (3) 중기에 대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및 95년 시작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인권  
 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가 이행한 사항

○ 답변내용 (3)

정부는 이미 아동권리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  
 과정에서 어린이현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학교 사회과정에 "자율적인 시민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권리의무의 실행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가사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동권리 교육은 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구촌  
 클럽을 형성하여 아동권리교육을 하는 한편, 유니세프  
 법조인클럽을 통한 홍보(94.1월), 도덕교사협회 강의  
 (94.11월) 및 전국교사에 홍보책자 보급(95년 5월) 등을  
 통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법조인 및 아동  
 전문가에 대한 아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판사, 검사,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임관시 2-4주 동안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중  
 수시로 2-3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무부처 : 교육부

5. 신학회가 복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2-1...  
 에...  
 주...  
 리...  
 소...  
 주...  
 리...  
 유...  
 에...  
 유...  
 유...



질문내용 (4)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기구의 설치 및 음부즈맨제도, 아동인권감시기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 답변내용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관련 정책조정을 위한 기구 또는 체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하는 독립적인 기구나 음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입안, 시행은 관련부처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미만 아동의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9-25세내외의 청소년 정책은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고 각 자치단체는 가정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를 두고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각국 조사연구사업,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민간자원의 동원, 대국민제도 및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혼, 질병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가비행예방을 위한 상담·지도, 행정기관에 복지조치 의뢰 등을 위하여 전국 읍·면·동에 7,000명의 민간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음부즈맨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구 및 상담요원의 전문화, 아동위원회  
대한 활동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질문내용 (5)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아동 관련 자료 등의 개발과 분류, 정리작업 현황 및 계획

○ 답변내용 (5)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초·중학교 입학률, 졸업률, 사망율, 연령별 영양섭취율등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지표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조직 또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관계부처의 정책 및 국내외 통계지표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